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본 협회 조사부

1. 제도내용

1. 적용대상회사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중 자산총액의 합계액의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일지라도 포함되지 않으며, 연도중에 1~10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 부터 적용된다.

2. 적용대상거래 : 대규모내부거래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임

-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전일의 자본금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 적용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해당된다. 따라서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도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 ◀ 참고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 관련자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 해설 ▶ 특수관계인에는 동일인,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 동일인의 친족(혈족8촌, 인척4촌), 계열사의 임원 등이 포함됨
-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란
 - 자금거래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금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함.

- 유가증권거래 :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자산거래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채무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함.
-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하며, 이사회결의 및 공시를 회피하고자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봄
-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한 거래금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에 의함
 - 자금거래 : 실제 거래하는 금액.
 - 유가증권거래 :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 다만, 주식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
 - 자산거래 : 실제 거래하는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차거래 등의 경우는 다음 기준 적용
 - 부동산임대차거래 : 보증금과 계약기간동안의 월임대료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 보증한도액
 - 보험계약 : 보험료총액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 <문1> 양 거래당사자가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본 규정에 의해 이사회결의 및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 <답>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당사자는 이사회결의 및 공시의무 부과됨. 따라서 모두 해당되면 양 당사자가, 일방 거래당사자만 해당되면 해당되는 거래당사자만 의무부과됨
- <문2> “특수관계인을 위하여”라는 거래에 대한 예시
- <답>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CP 등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계열사가 인수하는 경우 등임. 이러한 경우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은 비계열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를 위하여 주식, CP 등을 인수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내부거래에 해당됨
- 이 경우 공시양식의 거래상대방란에는 거래를 중개한 비금융계열회사를 기재하고, 거래 내역란 중 채권(또는 CP 등)의 발행자란에 계열사를 기재하면 됨
- <문3>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은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회사만 공시의무가 있는데, 공정거래법도 동일하지 여부
- <답> 공정거래법은 대규모내부거래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채무보증의 경우 제공받는 회사도 의무부과됨. 이에 대한 공시양식은 상장법인의 공시양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별도로 양식을 마련하였음
- <문4> 계열사 발행 액면 100억원의 CP를 계열사가 98억원에 인수한 경우, 인수한 계열사의 의무

부과여부

<답> 유가증권의 거래금액 기준은 액면금액이므로 의무부과됨

<문5>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예시

- <답> ① 일정한 거래후 그 결과로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거래
-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수익증권이나 기타 유가증권 매입후 중도 환매하거나 만기가 되어 해제하는 경우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수익증권(만기가 없고 중도 환매 수수료가 없는 수익증권)의 출금의 경우
- ② 비계열사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하여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 ③ 어음거래약정(CP거래약정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 ④ 투신사와 계열증권회사간 수익증권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⑤ 증권회사가 판매한 수익증권 대금을 동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탁한 계열 투신사에게 입금하는 경우
- ⑥ 진성어음이나 매출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 상품·용역거래에 수반되어 발행·유통되는 어음임

<문6> 계열사 A가 회사채 200억원을 발행하고, 이를 계열증권사가 총액 인수한 후, 이를 계열사 B에게 110억, 계열사 C에게 50억, 계열사 D에게 40억을 매각한 경우 계열사 A, B, C, D 및 계열증권사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여부

<답> 계열사 A, 계열증권사, 계열사 B :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있음
계열사 C, D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

<문7> 2000년 4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해 계속적으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는지

<답>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할 때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하므로 본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계약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는 새로이 의결할 필요는 없음

3.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의무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또한 그 내역을 공시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사항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가. 이사회 의결절차 및 방법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나. 공시시기 및 절차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공시시기의 계산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공시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공휴일 익일에 공시한다.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수탁기관의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공시내용 및 주요내용의 변경

- 공시내용은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임
-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
 - 공정거래법 해당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 공시사항과 동일한 것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공정거래법만 해당되는 공시사항은 별도로 양식 마련
 - 금융·보험회사의 분기별 공시양식
 - 비금융·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분기별 이사회 의결 내용의 공시양식
 -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대한 공시양식 등
-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다음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함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과 거래금액, 거래단가 등의 20% 이상의 변경 등

라.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음. 다만 그 거래내용은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는 금융·보험회사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하여 행하는 금융거래행위를 말하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 건별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금융·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음. 그러나, 의결결과는 1일 이내에, 집행결과는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문1>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되는 사항 예시

<답> ① 계열사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 이 경우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계열·비계열사인지 여부를 불문함

②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계열금융사가 인수하거나 매입하는 경우

- 유통중인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계열금융사가 단순 중개하는 경우에도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됨

- ③ 채권(회사채, CP등 유가증권)을 증권사가 계열사와 매매하는 경우
 - 단순 중개의 경우에도 채권매매의 양 당사자중 계열사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됨
- ④ CP 중개·인수·할인 등의 매매행위
- ⑤ 수익증권(주식형·채권형)을 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또한, 계열투신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을 비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도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함
- ⑥ 초단기수익증권(MMF 등)을 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⑦ 계열 생보사에 종퇴보험, 퇴직보험,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 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함
 - 공시시기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입시점이 아니라 보험계약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함
- ⑧ 풀자금을 차입 또는 대여한 경우
 - 한국자금중개(주)를 통한 계열회사와의 풀거래도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됨
- ⑨ 투신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 주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문2>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거래행위별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해당되는 거래행위 예시

- <답> ① 계열사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② 전환사채를 만기일전에 주식으로 중도 전환하는 경우
 ③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④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임대차하는 경우

<문3> 비금융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시 수익증권이나 CP 등 수시로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분기별 거래금액(거래한도)을 어느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 <답> 원칙적으로 금융상품별(예: 수익증권, CP, 회사채 등)로 대규모내부거래기준을 상회하는 예상 거래건수의 거래금액을 누적 합산한 금액이 거래한도임. 단, 수익증권 중 초단기수익증권(MMF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한도를 잔고금액을 기준으로 함
- 초단기수익증권은 만기가 없는 수익증권으로써 중도환매수수료가 없는 수익증권을 의미함
-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1일 이내에 공시하고, 행위발생시마다 행위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그리고, 분기별로 의결한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여야 함

<문4> CP 만기도래시 동일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발행 또는 인수하는 경우, 공시시기 및 거래금

액 산정방법

<답> CP거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임.

따라서 금융사는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공시하고, 비금융사는 행위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다만, 이사회 의결은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음)

개별 건당 거래금액은 만기도래후 새로이 발행 또는 인수한 CP액면금액 기준으로 함

다.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상의 공시가 중복되는 경우

- 공정거래법상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공시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수탁기관의 업무

수탁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공시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을 준용함

- 수탁기관은 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관련기관(공정위,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에 전송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기관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이 전자문서의 제출방법·절차를 정한 『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정 요청할 수 있다.

5. 위반시 제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위반 행위유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규모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 상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1억원, 임직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은 본지의 '부록' (96면)에 게재하였다.

차별적 취급

